|  |  |  |
| --- | --- | --- |
| **기업공시정보 추출검사 잠행방법**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67호<기업공시정보 추출검사 잠행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의 심사를 통과하여, 이를 발표하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국장 장모2014년 8월 19일**제1조** 기업정보공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기업공시 정보의 추출검사업무를 규범하기 위하여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등록자본등기제도 개혁방안> 등 행정법규와 국무원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기업공시정보추출검사라 함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무작위로 일정한 비율로 기업을 추출하여,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된 정보상황에 대해 검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지칭한다.**제3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의 기업공시정보 추출검사업무를 책임지고 지도하며, 수요에 근거하여 전개하거나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을 조직하여 기업공시정보 추출검사업무를 전개한다.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해당 관할구역의 기업공시정보 추출검사업무를 책임지고 조직하거나 전개한다.**제4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공평한 규범의 요구에 따라, 기업등록번호 등 무작위 추첨방식에 근거하여 관할구역 내 3%보다 적지 아니한 기업을 추출하여 검사명단을 확정해야 한다.**제5조** 추출검사는 부정향추출검사와 정향추출검사로 나뉜다.부정향추출검사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무작위로 추첨하여 추출한 검사기업 명단을 확정하고,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된 정보상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칭한다.정향추출검사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업유형, 경영규모, 관련산업, 지리구역 등 특정한 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추첨하여 추출한 검사기업 명단을 확정하고,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된 정보상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칭한다. **제6조** 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본 방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된 검사명단에 근거하여, 등기기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감독관리 중 발견하거나 신고에 근거하여 기업공시 정보가 진실적인 상황을 은폐 및 허위날조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기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은 하급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위탁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제7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매년 연도보고 공시가 완료된 후,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된 기업의 정보상황에 대해 부정향추출검사를 1회 진행한다.**제8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업공시의 정보를 추출검사하는 방식으로 서면검사, 실지감사, 인터넷감측 등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추출검사 중 회계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심계, 험자, 자문 등 관련업무를 전개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기타 정부부문이 진행한 검사, 감사결과 또는 전문기구가 내린 전문적인 결론을 이용할 수 있다.**제9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추출검사를 받는 기업에 대해 실사를 실시할 때, 검사인원은 2인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증서를 제시해야 한다.검사인원은 실지감사기록표에 기입해야 하고 감사상황을 실질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기업의 법정대표인(책임자)으로부터 서명 또는 기업의 날인을 받아 확인한다. 서명 또는 날인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인원은 원인을 밝혀야 하고 필요시 관련인원에게 요청하여 증인을 세운다.**제10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법에 따라 검사를 전개할 때 기업은 협조와 함께 질문조사에 응해야 하고,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검사수요에 따라 회계자료, 심계보고, 행정허가증명, 행정처벌결정서, 장소사용증명 등의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이 협력하지 않아 상황이 엄중해지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제11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검사를 거쳐 기업 내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 업무일 내 검사결과를 해당 기업의 공시정보에 기록해야 한다.**제12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검사 중 기업이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에 따라 규정된 기한에 연도보고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명령한 기한에 유관 기업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정보가 진실적인 상황을 은폐 및 허위날조한 것임이 발견되는 경우, <기업경영이상명부 관리 잠행방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제13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검사결과를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공시해야 한다.**제14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본 방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개정을 명령하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원에 대해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처리한다.**제15조** 기업공시정보추출검사 관련 문서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제16조** 개체공상호, 농민전업합작사의 연도보고 정보추출검사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제17조** 본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제18조** 본 방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企业公示信息抽查暂行办法**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67号　　《企业公示信息抽查暂行办法》已经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4年10月1日起施行。 　 　局长 张茅 　 　2014年8月19日　　**第一条**　为加强对企业信息公示的监督管理，规范企业公示信息抽查工作，依据《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注册资本登记制度改革方案》等行政法规和国务院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企业公示信息抽查，是指工商行政管理部门随机抽取一定比例的企业，对其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信息的情况进行检查的活动。 　　**第三条**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负责指导全国的企业公示信息抽查工作，根据需要开展或者组织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开展企业公示信息抽查工作。 　　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局负责组织或者开展本辖区的企业公示信息抽查工作。 　　**第四条**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和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局应当按照公平规范的要求，根据企业注册号等随机摇号，抽取辖区内不少于3%的企业，确定检查名单。 　　**第五条**　抽查分为不定向抽查和定向抽查。 　　不定向抽查是指工商行政管理部门随机摇号抽取确定检查企业名单，对其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信息的情况进行检查。 　　定向抽查是指工商行政管理部门按照企业类型、经营规模、所属行业、地理区域等特定条件随机摇号抽取确定检查企业名单，对其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信息的情况进行检查。 　　**第六条**　各级工商行政管理部门根据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和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局依照本办法第四条规定确定的检查名单，对其登记企业进行检查。 　　工商行政管理部门在监管中发现或者根据举报发现企业公示信息可能隐瞒真实情况、弄虚作假的，也可以对企业进行检查。 　　上级工商行政管理部门可以委托下级工商行政管理部门进行检查。 　　**第七条**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于每年年度报告公示结束后，对企业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信息的情况进行一次不定向抽查。 　　**第八条**　工商行政管理部门抽查企业公示的信息，可以采取书面检查、实地核查、网络监测等方式。抽查中可以委托会计师事务所、税务师事务所、律师事务所等专业机构开展审计、验资、咨询等相关工作，依法利用其他政府部门作出的检查、核查结果或者专业机构作出的专业结论。 　　**第九条**　工商行政管理部门对被抽查企业实施实地核查时，检查人员不得少于两人，并应当出示执法证件。 　　检查人员应当填写实地核查记录表，如实记录核查情况，并由企业法定代表人（负责人）签字或者企业盖章确认。无法取得签字或者盖章的，检查人员应当注明原因，必要时可邀请有关人员作为见证人。 　　**第十条**　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开展检查，企业应当配合，接受询问调查，如实反映情况，并根据检查需要，提供会计资料、审计报告、行政许可证明、行政处罚决定书、场所使用证明等相关材料。 　　企业不予配合情节严重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 　　**第十一条**　工商行政管理部门经检查未发现企业存在不符合规定情形的，应当自检查结束之日起20个工作日内将检查结果记录在该企业的公示信息中。 　　**第十二条**　工商行政管理部门在检查中发现企业未按照《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规定的期限公示年度报告，或者未按照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的期限公示有关企业信息，或者公示信息隐瞒真实情况、弄虚作假的，依照《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的规定处理。 　　**第十三条**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将检查结果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统一公示。 　　**第十四条**　工商行政管理部门未依照本办法的有关规定履行职责的，由上一级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有关规定予以处理。 　　**第十五条**　企业公示信息抽查相关文书样式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统一制定。 　　**第十六条**　个体工商户、农民专业合作社年度报告信息抽查参照本办法执行。　　**第十七条**　本办法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负责解释。 　　**第十八条**　本办法自2014年10月1日起施行。 |